

##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김희강\*\*

---

최근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은 인구구조, 가족 형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는 인구 고령화, 출산률 하락, 돌봄위기, 산업고용율 하락, 임시직의 증대 같은 소위 신사회적 위험이라 일컫는 현상을 야기했다. 기존 복지국가 논의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음에, 작금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이 대두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보다 원론적으로, 더 나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며, 그 답으로 돌봄국가(caring state)를 제안한다. 돌봄국가란 돌봄윤리(care ethics)를 규범적 원리로 운영되는 국가이다. 이 글의 목적은 돌봄윤리를 소개하고 더 나은 복지국가의 규범적 지향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돌봄국가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제어: 돌봄국가, 돌봄윤리, 인간의존성, 신사회적 위험, 복지국가

---

### I. 서론

최근 새로운 복지국가(new welfare state)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Esping-Andersen, 2002; Esping-Andersen, 2009; Pierson, 2007). 후기산업사회로의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562).

\*\*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철학, 규범적 정책분석 등이다(heekangkim@korea.ac.kr).

진입은 인구구조, 가족형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는 인구 고령화, 출산률 하락, 돌봄위기, 산업고용률 하락, 임시직의 증대 같은 소위 신사회적 위험을 초래했다. 기존 복지국가 논의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데,<sup>1)</sup> 작금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이 대두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아직 진정한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조차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김영란, 2008; 윤희식, 2011; 김교성, 2013; 김병섭 외, 2015).

그렇다면 새로운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보다 원론적으로, 더 나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sup>2)</sup>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며, 그 답으로 돌봄국가(caring state)를 제안한다. 돌봄국가란 돌봄윤리(care ethics)를 규범적 원리로 운영되는 국가이다. 이 글의 목적은 돌봄윤리를 소개하고 더 나은 복지국가의 규범적 지향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돌봄국가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sup>3)</sup>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돌봄국가 운영의 규범적 원리인 돌봄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II장). 이를 통해 돌봄국가의 특징을 명시화할 것이다(III장). 특히 돌봄국가와 복지국가의 차이를 세 가지 지점—(1)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에 기초한 복지, (2)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3)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결론(IV장)에서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돌봄국가가 한국사회

1) 혹자는 이를 “복지위기”로 표현하기도 한다(Castles, 2004).

2) Daniel Engster는 최근 저서 《정의, 돌봄, 복지국가》(*Justice, Care, and the Welfare State*)(2015)에서 필자와 유사한 질문을 던진다. Engster의 저서는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문제제기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Engster와 필자의 차이는 Engster는 돌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디자인하고자 시도한 반면, 필자는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돌봄국가와 복지국가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돌봄국가를 복지국가 보다 발전된 형태, 즉 복지국가 보다 정의롭고 더 나은 국가형태로 언급하고 있는 연구로는 Engster(2015), Tronto(2001: 74-82), Kittay(2001a: 48-59) 참조. Engster는 돌봄국가를 돌봄복지국가(caring welfare state), 새로운 비전의 복지국가(new vision of welfare state), 정의로운 복지국가(just welfare state)로 다양하게 칭한다.

3) 다음 장에서 서구 학계의 돌봄윤리 논의의 시작과 흐름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국 학계에서 관찰되는 돌봄윤리 논의는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로 여성학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지만(허라금, 2006; 조한혜정, 2006; 김희강·강문선, 2010; 마경희, 2011; 남찬섭, 2012), 그마저도 서구 학계 논의의 소개나 시론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이 글의 목적에 부합하듯 돌봄윤리가 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원리로서 언급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의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에 던지는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 II. 돌봄윤리

### 1. 시작과 흐름

앞서 필자는 돌봄국가란 돌봄윤리가 사회운영의 규범적 원리로 작동하는 국가라고 했다. 돌봄윤리는 1980년대 일군의 여성주의 학자들이 처음 제시했다(Gilligan 1982; Noddings 1984; Ruddick 1980). 그 정초로 언급되는 것이 심리학자 Carol Gilligan(1982)의 영향력 있는 저서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이다. 이 책에서 Gilligan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근거로, 여학생들은 전통적인 윤리 가치인 권리(rights)와 규율(rules) 같은 정의에 덜 반응하지만, 대신에 관계(relationships)와 책임(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돌봄 가치에 보다 반응하였다고 지적한다. 정의를 윤리의 기준으로 놓고 실험하게 된다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윤리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지만,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윤리성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단지 남성과 여성의 윤리적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윤리의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 즉 남성은 정의에 기초한 윤리관을 여성은 돌봄에 기초한 윤리관을 갖는다는 것이 Gilligan 주장의 핵심이다.

Gilligan의 주장은 기존의 윤리체계가 간과해 왔던 돌봄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돌봄윤리의 적용이 개인적 수준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그것의 특징이 여성적(feminine) 속성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돌봄윤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적 함의를 갖는 정치이론으로, 여성적 윤리를 넘어 인간 보편의 윤리로 논의가 확장·발전되고 있다. 현재 돌봄윤리는 심리학 및 철학·윤리학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규범적 이론 틀로서 제시되고 있다(Held, 1993; Tronto, 1993; Sevenhuijsen, 1998; Robinson, 1999; Kittay, 1999). 최근에는 교육, 사회정책, 국제정치, 인간안보, 민주주의, 불평등, 문화, 경영·경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적용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Noddings, 2002; Held, 2006; Robinson, 2011; Tronto, 2013; Engster, 2007; Hamington and Sander-Staudt, 2011).<sup>4)</sup>

Daniel Engster and Maurice Hamington(2015: 6)은 돌봄윤리를 롤즈의 자유

주의, 자유지상주의, 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 가능성 접근(capabilities approach), 혹은 공동체주의 같은 여느 규범적 정치이론에 버금갈 정도의 이론적 완성도를 갖췄다고 평가한다. 필자의 입장과 이 글의 논지도 이들의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 돌봄윤리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할 수 있겠으나, 이론 및 실천의 잠재력과 함의는 여느 규범적 정치이론 보다 지대하다.<sup>5)</sup> 무엇보다도 기존 정치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신사회적 위험을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대안 논의로 돌봄윤리는 손색없음이다.<sup>6)</sup> 돌봄윤리는 케어리즘(carism)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정치이론으로 대우받기에 충분하다.

## 2. 내용과 특징

여타 정치이론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돌봄윤리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지점들은 돌봄윤리의 내용과 특징을 공통적으로 구성한다.<sup>7)</sup>

### 1)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

돌봄윤리는 인간의 의존성을 전제한다. 태어난 후, 고통으로 죽음을 맞기 전, 장애가 있을 때, 아플 때,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의존적이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 생을 이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했었다. 현재도 인간은 누군가의 돌봄에 생을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의존의 시기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

4) 돌봄윤리의 역사, 흐름, 이론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Collins(2015) 참조.

5) 박애(benevolene), 자선(beneficence), 동감(empathy) 같은 주제는 윤리학에서 줄곧 다루어 온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돌봄을 주제로 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동감과 돌봄윤리 간의 상보성에 관한 연구는 Slote(2007) 참조.

6) 이 글에서는 돌봄윤리와 다른 정치이론과의 비교 논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비교 논의는 개별 이론이 전제하는 인간관, 사회관, 정부관 등의 차이에 기초할 수 있을 것이다.

7) 돌봄윤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돌봄윤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이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인간윤리도 관계적이라는 점, 2) 돌봄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 3) 돌봄윤리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론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맥락적이라는 점, 4) 공사구분 같은 전형적인 도덕의 경계를 가로지른다는 점, 5) 인간 감정이 윤리이론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다. 돌봄윤리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Engster and Hamington(2015: 3-4), Held (2006: 9-15), Engster(2015: 18-23) 참조.

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명제가 언제나 참인 것처럼, 살아있는 인간의 의존성도 인간 존재에 내재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인간의존의 사실'(fact of human dependency)이다(Kittay, 1999; Fineman, 2001).

따라서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의존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벗어나거나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존재론적 사실이다. 물론, 의존의 범위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장애로 평생 동안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태어난 후와 죽기 전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비의존적인(독립적인) 삶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의존의 시기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인간은 결국 의존적이라는 사실은 의존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보편적인 것, 정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 결과 돌봄윤리는 의존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차별, 배제, 혐오를 비판한다. 신생아의 의존이 정상적인 것이듯, 중증 장애인의 의존도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영유아의 의존 기간을 겪었듯, 누군가는 같은 의존을 좀 더 길게 경험할 뿐이다. 장애는 그 자체로 우연적인 것이겠지만, 장애를 만드는 것, 즉 장애를 장애로 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회이다(Kittay, 1999: 22-48; Fineman, 2001: 23-30).

'인간의존의 사실'에서 볼 때, 자유주의에서 전제하는 비의존적이고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인간은 단지 허구이며 가식이다(Kittay, 2001b; Fineman, 2004: 7-30).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이다. 인간은 흠스가 상정하듯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버섯처럼 솟아난 개인들이 상호교환과 계약으로 시장을 만들고, 이들이 뜻을 모아 정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장과 정부를 신봉한다면, 허구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조직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Kittay, 2007). 자유주의적 허구 속에서 의존의 정상성은 쉽게 무시되며, 의존은 쉽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자유주의적 허구는 의존에 따른 돌봄 필요를 가차 없이 천대한다(Fineman, 2004: 31-54).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의존이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보편적인 것, 정상적인 것이듯, 돌봄을 받는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보편적인 것, 정상적인 것이다. 의존적인 인간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 누구로부터건(어머니건, 간호사건, 먼 친척이건, 유모건) 내가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생존하지도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나의 정체성의 일부도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돌봄의존적이라는 사실은,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담보한다. 의존의 시기에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의존인(dependents)은 생존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취약한 의존인에게 돌봄을 제공해야하는 외면할 수 없는 윤리적인 의무, 그것이 바로 돌봄윤리이다.

돌봄윤리는 인간의 돌봄의존성(care dependency)과 이에 따른 취약성(vulnerability)에서 비롯된다(Kittay, 1999: 49-73; Engster, 2007: 21-65).

돌봄윤리는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은 두 단계로 나눈다. 첫째, 의존인의 의존성이 다. 이 때의 의존은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이다. 우리 모두는 생애 주기에 따라 (또한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의존을 경험한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존인의 피할 수 없는 의존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윤리적 의무가 발생한다. 의존인의 의존성과 이에 따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의존인을 돌보아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돌봄제공자에게 부과된다. 의존인과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1차 돌봄관계를 구성한다(Kittay, 1999: 29-48; Fineman, 2004: 34-37).

둘째, 돌봄제공자의 의존성이다. 이 때의 의존은 돌봄을 제공함에 수반되는 파생된 의존(derived dependency)이다. 돌봄제공자는 의존인에게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진다. 이는 어떤 개인적 특질(속성)에 기인하는 의존(불가피한 의존)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의존이다. 이러한 돌봄제공자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돌봄제공자를 돌보아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가 조달자(provider)에게 부과된다. 조달자는 1차 돌봄관계 밖에 있는 제3자이다. 조달자의 돌봄윤리는 취약한 돌봄제공자에게 자원을 조달하는 의무이지만, 보다 넓게는 돌봄제공자를 돌봄으로써 1차 돌봄관계 전체를 돌보는 사회적 의무로 이해된다. 돌봄제공자가 의존인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의존인이 돌봄제공자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 조달자에게는 돌봄윤리를 이행하여 1차 돌봄관계가 유지·보호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돌봄제공자와 조달자의 관계는 2차 돌봄관계를 구성한다(Kittay, 1999: 29-48; Fineman, 2004: 34-37).

결과적으로, 돌봄윤리에서 돌봄은 의존과 필연적으로 관련된다. 의존인을 돌보아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는 불가피한 의존인 뿐만 아니라 의존인을 돌보는 돌봄제공자인 파생된 의존인에게도 해당된다. 인간의존의 정상성과 취약한 의존인을 돌보아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가 돌봄윤리의 근간을 형성한다.

## 2) 돌봄관계의 우선성

돌봄윤리의 입장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인 돌봄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의존적인 인간은 돌봄을 받아야 하며, 의존인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성(sex)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적 의무이다. 돌봄관계 없이는 어떤 개인도, 어떤 사회도 존속하고 성장할 수 없다. 돌봄관계 없이

는 시장적 관계도, 정치적 관계도, 관료제적 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윤리에서는 돌봄관계가 사회의 어떤 제도와 관계보다 근본이 되며 우선시된다(Fineman, 2004: 47-48; Held, 2006: 107-137; Tronto, 2015).

그러나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비의존적(independent)이고 생산적인(productive) 개인들의 결사체로 상정하는 자유주의 이론 틀에서는 이러한 돌봄관계를 논의할 여지가 없음이다.<sup>8)</sup> 무엇보다도 돌봄윤리가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문제점은, 이제껏 누군가에 의해 돌봄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작금의 사회가 존속되고 있음이,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누군가는 돌봄의무를 담당해 왔으며, 그래서 돌봄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전제하듯, 자유롭고 평등하며 비의존적이고 생산적인 개인을 상정하면서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받은 돌봄수혜 사실에 눈을 감는다면,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제도의 신성성과 정부의 정당성이라는 미명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안주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Tronto(1993: 146-147; 2013: 103-106)는 “무책임의 특권”(privilege irresponsibility)에 대해 비판한다.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사회구조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는 반면, 반대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특혜와 이득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즉,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돌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Tronto(2013: 171-179)의 또 다른 표현으로, 돌봄 책임의 “무임승차자”(passes)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진정한 평등도 진정한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돌봄윤리는 공동체주의의 논의도 돌봄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가족의 역할과 가치를 언급해보자. 공동체주의의 가족은 돌봄관계와 상당히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은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와 양육자인 어머니, 자녀들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돌봄제공자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아버지는 조달자로서 어머니에게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1차 돌봄관

8) Martha Nussbaum(2006: 168-171)에 따르면, 그녀의 가능성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은 자유주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윤리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의 경우 돌봄윤리 보다 더 나은 이론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계와 2차 돌봄관계의 전형을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은 돌봄윤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돌봄제공자인 어머니의 파생된 의존성과 이에 따른 돌봄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는 조달자인 아버지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아버지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학대와 폭력에 취약하게 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갖고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즉 사회경제구조상 자율적이고 비의존적이며 생산적인 개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위상은 매우 초라해진다.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봄제공자는 주로 여성의 몫으로 전담되며, 여성의 의존성은 작금의 사회경제구조 아래에서 빈곤, 폭력, 배제, 학대에 취약한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Kittay, 2001c: 537-541).

돌봄윤리 학자들은 돌봄관계 속에서 인간됨(personhood)의 의미를 재설정한다(Held, 2006: 44-57).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아닌 돌봄관계이며, 인간됨의 의미는 돌봄관계에 위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타인과의 돌봄관계 없이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시장에서 원하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며, 눈빛 하나로 손끝의 움직임으로 돌봄 관계 속에 있는 한, 장애인도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다. 심한 장애를 지녀 근육 하나도 쓸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엄마의 목소리 혹은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미미한 느낌을 받으며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는 돌봄관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됨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Kittay 2001b, 562-565). 이는 인간됨의 의미를 비의존적이고 자율적이며 생산적인 가치에서 찾는 자유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돌봄윤리에서 정의하는 인간됨의 의미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권) 개념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Knijin and Kremer, 1997: Tronto, 2001). 정치공동체에서 원하고 기대하는 시민 상(象)은 시장이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자기이해에 충실한 상인(商人)이 아니라, 타인의 돌봄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돌봄 의무를 외면하지 않는 돌봄인(人)이다.

### 3) 돌봄의 공공윤리와 공적 책임

돌봄윤리는 공사관계의 구분을 배격한다. 돌봄 필요를 제공하는 윤리적 의무는 사적 영역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돌봄윤리에 대한 공적 책임, 즉 돌봄의 공공윤리,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9)

돌봄의 공공윤리를 잘 드러내는 개념이 Eva Kittay(1999: 67-71)가 제시한 돌리아(doulia)이다. 그리스 시대 산모가 아이를 돌볼 때, 산모를 돌보는 의무를 칭하는 돌리아 개념을 차용한다. 산모가 아이를 돌보듯, 돌라(doula)라고 불리는 산모도우미는 아이를 돌보는 산모를 돌보았다. 돌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돌라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산모를 돌봄으로써 산모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산모로부터 좋은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우리 모두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했듯이,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어느 엄마의 아이(some mother's child)인 이상,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공적 윤리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돌봄윤리 학자들은 돌봄의 공공윤리를 다음의 이유로 중시한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모두는 의존적이며 돌봄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존인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돌봄제공자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의존적인 지위로 진입하게 되는 파생된 의존인(즉 돌봄제공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정부와 사회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Kittay, 1999: 132-133; Engster, 2007: 36-65).

그 결과 돌봄의 공공윤리는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계약 관계인 쌍무적 호혜성(exchange reciprocity) 개념에서 벗어난다. 이는 상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생성되는 논의가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고, 후에 어머니가 노인이 되고 성인이 된 내가 돌봄을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다. 돌봄관계에서 호혜성은 반드시 쌍무적이지 않다. 내가 받은 것 보다 더 많은 양의 돌봄을 주기도 하며, 누구는 평생 돌봄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또한, 쌍무적 호혜성 개념으로는 조달자(제3자)의 돌봄 의무를 설명할 수 없다. 돌봄의 공공윤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자관계를 넘어서는 “배태된 의존성”(nested dependency)에 기초한 확장된 호혜성 개념이다(Kittay, 1999: 132). 돌리아 방식의 호혜성 개념이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돌봄을 받았다.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돌봄 필요를 제공하고 돌봄관계를 보살피야

---

9) 정의와 돌봄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돌봄과 정의는 별개일 수 있으며 돌봄이 정의보다 우선한다는 입장(Held, 2015), 돌봄과 정의는 밀접하게 관련되며 돌봄에 기초한 정의를 주장하는 입장(Engster, 2007; Kittay, 2015), 자유주의적 정의도 돌봄을 수용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Nussbaum, 2006; Eichner, 2015) 등이 있다.

하는 공적 의무가 도출된다.

따라서 돌봄윤리는 사적윤리를 넘는 공공윤리이며,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의 규범적 기초이다. 돌봄의 공공윤리는 법, 제도, 사회구조와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정의의 원칙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사회체계의 모든 부분과 제도가 보편적인 가치로서 돌봄을 근간으로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돌봄의 공공윤리는 돌봄의 제도화(혹은 공식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돌봄의 제도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돌봄의 공공윤리에서 강조하는 바는, 돌봄의 제도화 여부를 뛰어넘어 돌봄이 개인과 사회에 필수적인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공적 의무와 책임이라는 점이다.<sup>10)</sup>

### III. 돌봄국가의 복지

이 장에서는 돌봄윤리를 규범적 원리로 삼는 돌봄국가의 복지를 다음의 세 가지 지점—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 돌봄관계, 돌봄의 공공윤리—을 중심으로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와 비교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 1.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에 기초한 복지

돌봄국가는 인간의존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취약한 의존인에게 돌봄 필요를 제공하는 윤리적인 의무인 돌봄윤리가 돌봄국가의 근간을 형성한다. 따라서 돌봄국가에서 복지란 인간의존의 취약성에서 발생한 돌봄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로 이해할 수 있다(Goodin, 1985: 145-153). 이 경우 돌봄윤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존—불가피한 의존과 파생된 의존—모두이다. 즉, 불가피한 의존인의 돌봄 필요뿐만 아니라 파생된 의존인인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도 고려대상이다. 불가피한 의존인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보다 직접적으로 돌봄제공자에게 부과된다면, 돌봄국가의 복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돌봄제공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이다. 이점에게 기존 복지국가와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

10) 실제 한국사회에서도 돌봄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화가 돌봄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질문이다. 현재 한국의 돌봄정책이 돌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지영(2010), 석재은(2011), 정영애(2013), Kim(2016) 참조.

기존 복지국가 정책과 담론은 돌봄제공자의 의존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멸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의존’ 개념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함의이다. 1990년대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 진행된 복지개혁은 노동 중심적 복지, 일을 위한 복지, 노동연계 복지를 강조하며 개인책임의 논리 속에서 사회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수혜자는 복지의존자로 낙인 지어졌다. 복지수혜를 받는 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들에게 “복지엄마”(welfare mom) 혹은 “복지여왕”(welfare queen)이라는 조롱조의 딱지가 따라 다녔다. 이들은 노동없이 단지 납세자의 세금을 축내는 국가의 부담일 뿐이었다. 이들은 게으르고 생산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병리적으로 문제 있음으로 묘사되었다(Hirschman and Liebert, 2001: 5; Fineman, 2001: 23). 결국 이들은 개인적인 부도덕과 부정의로 인해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한 한국 학계에서도 복지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함의에는 예외가 없어 보인다. 예컨대, 김태성·성경룡의 《복지국가론》은 1998년 초판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주 인용되는 복지국가에 관한 대표적인 교과서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의존성’이라는 소재목의 세션에서 복지의존에 대한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의존성”을 지닌 “도덕성이 훼손된” 복지수혜자에 대한 비판의 논의만을 소개하고 있다(김태성·성경룡, 2014: 310-317).

이와 관련되어 Nancy Fraser and Linda Gordon(2002)의 연구는 ‘의존’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의 계보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후기산업사회인 현재 ‘복지의존’이 어떻게 부정적인 개념이 되었는지 그 맥락을 설명해준다. Fraser and Gordon에 따르면, 산업사회 이전의 의존이란 사회정치적 위계질서에 대한 종속으로 왕과 귀족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범용되었다. 경제가 사회정치적 관계에 종속되는 부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지위가 낮고 충분히 부유하지 않아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의존적이라고 인식되었다. 이 때 의존이란 의미는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의존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사회정치적 위계질서가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공고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임금노동자는 규범성이 가미된 도덕적 해이를 내포하는 의존의 상징으로 대두되었다.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는, 즉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의존적이라 간주되었다. 특히 싱글맘은 복지수혜의 대표적인 단골로 등장하였고, 이들의 복지의존은 심지어 개인의 병적 장애와 등치되었고 Fraser and Gordon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약물의존, 알코올의존과 유사한 차

원에서 복지의존이 병리적으로 다뤄지거나, 정신의학적으로 의존적 개인의 인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즉, 자신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타인의 자선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개인의 병적·행동적 장애로 보게 되었고, 이러한 장애가 젠더와 인종과 결부된다는 선입견도 가세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의존을 부인하고 낙인찍고 배척하는 기존 복지국가 정책과 담론은 “위선”일 뿐이다(Fineman, 2001: 7). 이러한 위선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존 복지논의가 ‘비의존’이라는 도덕적 인간상의 왜곡된 ‘신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Fineman, 2004). ‘비의존의 신화’는 자율적이며 자립하고 생산하고 노동하는 인간을 도덕적 인간의 전형으로 여긴다. 이는 의존이 피할 수 없는 인간조건인 사실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오히려 의존은 자기절제의 부족, 미약함, 게으름을 의미한다. ‘비의존의 신화’ 아래에서 정부지원(복지수혜)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존성을 증명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돌봄국가의 복지에서 볼 때, ‘비의존의 신화’는 인간의 의존성, 돌봄 필요, 그리고 소위 자유롭고 도덕적인 인간을 위해 누군가는 돌봄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이는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를 간과하고 부인하는 복지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인간은 비의존적이라는 뒤틀린 ‘신화’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복지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지원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T. H. Marshall(1981)의 주장은 복지의존의 부정적인 함의를 희석시킬 여지가 있어 보인다. Marshall의 논의는 복지를 권리의 주체자인 시민이 국가에 대해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s), 즉 복지권(welfare rights)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하의 Marshall의 언급을 고려해 볼 때, Marshall 역시도 사회권의 권한 행사가 일면 시민의 능력을 떨어뜨릴(disempower)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sup>12)</sup>

사회권 - 포괄적으로 복지권으로 이해될 수 있는 - 에 대해서 고려해 보자면, 사회권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지 않았다. 내가 오래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권은 대중 사회의 강한 개인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

11) 이 지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여성)이 복지를 대신해왔다고 주장한다.

12) 또 다른 지점에서 Marshall의 사회권이 비판받은 이유는, 사회권의 내용 중 돌봄의 권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Marshall의 사회권은 가족(여성)이 담당하는 돌봄 책임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다(Knijn and Kremer, 1997: 331)

다. 그러나 이는 개인을 행위자(actor)가 아니라 소비자(consumer)로서 인식한다. 이 때 소비자로서 개인은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를 흉내 내거나 ‘조금 더’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중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의 영향력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영향력 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Marshall, 1981: 141; Tronto, 2001: 81에서 재인용).

이는 복지가 시민의 권리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정당성이 철저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민 주체성의 기반이 해체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시민은 왜 복지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왜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철저히 확립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여전히 베푸는 위치에 있으며 시민은 국가의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민은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상실한 채, 단지 소비하고 모방하는 개인으로 또한 정치인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생각 없는 대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국가의 복지는 다르다. 복지란 시민의 돌봄 행위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돌봄 행위에 참여하는 시민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복원하는데 복지의 초점이 맞춰진다(Tronto, 2001: 82).

돌봄국가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복지란 일반적인 의미의 필요(needs)라기보다 구체적으로 돌봄 필요(care needs)를 제공하는 의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을 조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Goodin, 1988: 27-50).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국가의 의무로서 복지가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서 볼 때, 인간의 의존성과 이에 따른 돌봄 필요, 특히 의존자를 돌보는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에 대한 인식을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돌봄제공자가 겪는 불평등, 차별, 착취와 억압의 구조적인 부정의를 직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돌봄제공자에 대한 낙인과 수모, 국가를 시혜적인 기관으로 보는 입장이 재생산될 것이다. 즉, 필요에 기초한 복지의 기존 이해도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복지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차별을 피하기 어렵다. Robert Goodin(1988: xi)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목적은 “사회에서 취약한 구성원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취약한 구성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를 고려하는 돌봄국가는 Goodin이 언급한 복지국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돌봄국가의 복지는 의존자의 돌봄 필요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돌

봄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로서의 복지이다. 이러한 복지의 실행을 위해서는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의존의 시기를 겪었으며 돌봄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돌봄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이상,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복지)으로부터 수혜자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Fineman, 2001: 37; 2004: 24, 27).

## 2.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Esping-Andersen(1990)는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복지국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이 같은 유형 분류는 이후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으나, 여전히 유효한 구분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즉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탈상품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탈상품화의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한 것이다. 개인이 노령, 실업, 산업재해, 질병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 인해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은 국가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가가 복지급여를 가급적 최소화한다. 반면,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은 국가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국가 논의, 즉 국가-시장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돌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 필요를 제공하는 돌봄윤리가 간과되고 있다. 기존 복지국가 논의는 주로 여성과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제공자의 돌봄과 이에 따른 이들의 취약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또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개체로 가정된다. 반면, 돌봄국가는 돌봄관계를 기초로 한다. 돌봄국가는 인간은 시장의 피조물이 아니라 돌봄의 피조물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돌봄국가에서 돌봄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하는 사회관계로서, 어떤 시장적 관계나 민주적 관계 보다 먼저 존재해왔던 관계로 인정된다. 또한 이는 시장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의 정당한 한계를 설정해주는 기준으로서 제시된다.<sup>13)</sup>

돌봄국가의 복지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이며 이들 간의 관

제가 모든 인간과 사회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다는 점에 기반을 둔다. 이 점에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Orloff, 1993; Lewis, 1992). 이들은 돌봄관계를 간과하는 가부장적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한다.<sup>14)</sup> 기존 복지국가 유형화는 시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따라서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에 부합하는 (주로) 남성 노동자의 시장에서의 우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사적영역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주로) 여성의 돌봄 노동은 간과되고, 여성의 열악하고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는 누락된다고 보았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입장에서는 돌봄제공자로서 의존인과의 돌봄관계에 있는 여성의 열악하고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기존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 무급(돌봄)노동과 유급(시장)노동 간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유형화의 과정에서 언급된 대안 모델로는 Nancy Fraser(1997: 59-62)가 제시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이나 Diane Sainsbury(1999)가 지적한 ‘개별화된 소득자-돌봄자 모델’(individualized earner-carer model) 등이 있다. 이들 모델은 기준이 되는 개인을 보편적 양육자로 상정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눈다. 예를 들어,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의 복지국가는 남녀가 모두 동시에 돌봄제공자이자 임금노동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감소와 돌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국가이다. 돌봄제공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성별화된 역할구분을 전제하는 사회구조를 전적으로 해체하고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맞는 재구조화를 지향한다. ‘개별화된 소득자-돌봄자 모델’의 복지국가도 남녀가 모두 소득자와 돌봄제공자를 불이익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국가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비용에 대한 공적 보상, 임금노동과 같은 수준의 돌봄노동 보상, 양성 모두에게 유리한 노동시장 등을 제공한다.

결국 Fraser(1997)와 Sainsbury(1999)는 시장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국가 유형화

13) 여기에서 ‘도시가 시장을 감싸고(contain) 있다’고 지적한 Karl Polany(2001)의 언급은 의미 있다. 이는 시장의 가치보다 사회의 가치가 우선함을 의미한다. 시장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도시)의 하위에 있을 뿐이다. 반면 사회적 관계는 돌봄 도시(caring city)를 지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14) 이들은 주로 젠더관계에 초점 맞췄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돌봄제공자를 둘러싼 돌봄관계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돌봄제공자는 여성이다.

를 비판하고 돌봄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이들 논의는 의존의 정상성, 돌봄 필요의 보편성, 돌봄제공자의 취약성, 그리고 돌봄관계의 우선성을 복지국가 논의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함을 함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논의에서 진보적인 복지논의가 보수적인 복지논의 보다 (성)평등적이라고 쉽게 간주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이들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진보적인 복지논의도 돌봄관계, 특히 돌봄제공자의 취약성을 간과하고 있는 한, 돌봄제공자가 겪는 불평등의 이슈를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은 국가가 시장을 규율하는 정도(탈상품화)에 따라 복지가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돌봄국가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복지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돌봄관계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를 논의하는 많은 사람들은 복지란 “시장적 자유”(market liberty)에 대한 “민주적 평등”(democratic equality)의 요구라고 설명한다(Moon, 1988).<sup>16)</sup>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화 요구로서 복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야기한 자유주의적 분배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평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재분배의 요구가 복지라는 설명이다. Marshall(1977)이 주장한 시민권으로서 사회권 역시, 시장적 분배가 야기한 불평등이 민주적 평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염려 속에서 탄생했다고 해석된다(Moon, 2004). 이 점에서 필자는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와 민주적 평등 간의 양립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Joan Tronto(2013)는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에서 진정한 평등은 사회에 돌봄윤리가 전제되고 돌봄 책임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만연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돌봄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야기되었고, 이는 민주적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돌봄 책임의 평등한 분배는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도 돌봄과 민주적 평등과의 상관성을 지지한다.

만약에 복지(정책)체제가 불평등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핵심적으로 돌봄에 주목해야 한다.....돌봄에 주목한다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즉, 공적 돌봄은 불이익 받고 불평등한 개인들에게 보다 평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을

15) 송다영(2014: 423)은 돌봄관계라는 표현 대신, “돌봄노동, 가족, 여성을 둘러싼 젠더화된 사회적 관계”라고 언급한다.

16) 더불어 많은 연구들이 자본주의의 성장과 이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요구 간의 동학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기원과 탄생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제공할 수 있다(Hirschmann and Liebert, 2001:10).

따라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달성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복지국가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한다면(정원오, 2010: 28),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복지국가는 바로 돌봄국가를 의미할 것이다.

### 3.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

돌봄국가에서 돌봄윤리는 공적 책임의 원리로, 즉 돌봄의 공공윤리로 적용·운영된다. 이는 복지란 결국 사회 전체가 담당하는 집합적인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chmidtz and Goodin, 1988: 145-154). 돌봄윤리가 개인적 수준에서 적용되거나 혹은 시장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가가 제도적인 조건을 통해 돌봄윤리의 적용 및 운영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Tronto, 2010). 다음의 Daniel Engster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들이 사적 결사체나 자선을 통해 돌봄의 공적 책임을 의심할 바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부)는 돌봄윤리를 적용함에 있어 사적 조직이 갖는 한계, 예를 들면 돌봄의 범위, 비정규적이고 불평등한 돌봄 분배, 무임승차차로부터 돌봄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의 무능함 등을 극복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Engster 2015, 25).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제도적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는 기존 복지와 다음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복지는 실업, 재해 및 퇴직 같은 노동 관련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예컨대, 실업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퇴직연금제도 등이 주된 제도적 장치였다. 물론 작금의 대다수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사회수당이나 사회적 서비스 같은 다양한 공적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돌봄정책 특히, 아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복지정책이 돌봄을 단지 가족과 여성의 일로 치부해버리곤 한다.

하지만,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 이슈에 보다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Sevenhuijen, 2003, Hamington and Miller 2006; Engster, 2015).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신사회적 위험은 주로 돌봄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기존의 복지국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돌봄위기’에 선제적이고 심층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지만,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 필요, 돌봄 의무와 돌봄관계를 전제하는 돌봄국가는 이러한 돌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Engster, 2015: 18). 무엇보다도 돌봄국가 복지의 장점은 단지 돌봄 이슈를 포함하도록 복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선다. 궁극적으로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 필요와 돌봄관계를 반영하는 사회경제구조의 재건축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돌봄 인프라의 구축이다. 엄격한 공사구분에 기초한 현행 복지정책을 재정립하고,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든 돌봄은 그 사회적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누구나 원하면 재능에 따라 돌봄을 제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갖는다. 또한 돌봄 제공자가 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온전히 돌봄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경제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유급 돌봄 노동도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돌봄 노동권과 공정한 노동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남녀 노동자는 가정에서 돌봄 제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든 노동자는 유급의 육아휴직(돌봄휴직)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돌봄 제공을 위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정책을 넘어 사회정책 일반에 보다 큰 함의를 갖는다.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인 빈곤문제를 살펴보자. 빈곤퇴치는 ‘빈곤과의 전쟁’이라 불리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쟁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돌봄국가의 복지는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빈곤문제를 접근한다. 기존의 빈곤정책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한다(Pearce, 1990: 269-271). 하나는 생계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빈자 모델(pauper model)이다. 전자는 외부의 사회적 위협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이나 연금정책을 제시하고, 후자는 건강한 육체를 가졌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훈련 및 교육정책을 제시한다. 전자는 이들이 잠시 시장을 벗어난 시기의 빈곤에 대해 지원을 하며, 후자는 이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 두 입장 모두 근본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실제로 빈곤을 겪는 대다수의 사람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빈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sup>17)</sup> 이것은 빈곤이 돌봄과 여러 겹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겪는 돌봄 결핍, 돌봄제공자에 대한 차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감내하는 불평등 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Pearce, 1990: 270).

기존 빈곤정책의 문제점은 그 정책 대상으로 돌봄 의무가 없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고 비의존적인 개인(주로 남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빈곤정책은 가정과 사적 영역에서 의존인을 돌보는 돌봄제공자(주로 여성)의 돌봄제공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사구분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시장노동과 비생산적인 돌봄노동을 구분하고, 비생산적인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전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없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은 요원하다. 모든 인간은 돌봄 의존적이며, 돌봄은 사회적 가치라는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빈곤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기존의 생계부양자 모델과 빈자 모델에 기초한 빈곤정책은 그 자체로 돌봄제공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오히려 더 강화할 뿐이다. 빈곤정책은 인간의 상호의존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 돌봄제공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직시하는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Pearce, 1990: 274-277).

결론적으로, 돌봄국가의 시작은 조달자의 역할을 국가가 성실히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Kittay의 돌리아 모델에서 산모를 돌보는 돌라의 역할이다. 국가가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돌라 역할의 핵심은 1차 돌봄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든, 시장이든, 무급이든, 유급이든, 돌봄제공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지지 않고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의 질을 보장하여 의존인이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돌봄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 IV. 결론 및 함의

이 글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으로 돌봄윤리를 규범적 원리로 삼는 돌봄국가를

17) 이는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서구가 달리 부자 한부모가족이 모자 한부모가족보다 많지만, 한부모가족의 빈곤 비율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또한 모자 한부모가족의 임금 수준은 다른 가족보다 가장 낮게 나타난다(서울신문, 16/03/23).

제시하고, 기존 복지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돌봄국가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글의 목적은 단지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돌봄국가의 장점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글은 어떤 국가가 더 나은 국가인가, 어떤 국가가 더 정의로운 국가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바탕에 두고 있다. 국가는 시민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는가? 국가는 시민에게 어떤 삶을 보장해야 하는가? 시민은 서로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와 “새로운” 복지국가를 갈구하는 학문적 시류에서 그 논의를 출발시켰다. 필자가 보기에 기존 복지국가 논의의 가장 큰 한계는 앞선 질문들과 같은 규범적인 숙고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에게 복지를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어떤 국가 형태보다 정의롭고 좋은 국가라면, 그 규범적 원칙과 원리는 무엇이며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생략해 왔다(Moon, 2004: 210; White, 2010: 19). 심지어 복지국가의 규범성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과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Esping-Andersen도 신사회적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제안하는 과정에, “(규범적) 사상이 기반이 된 주장”은 자신의 복지제안을 정당화 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재편에 있어 규범적 논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의 논리를 중심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sping-Andersen, 2009: 8, 15).

일반적으로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누고, 이들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축소되었다.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혹은 사회민주적 복지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보편적 혹은 선택적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더 다양하고 더 세분화된 유형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단순화하자면, 기존 논의는 주로 선택의 문제였다. 이는 복지국가란 결국 규범적 고민이 배제된, 단지 정치적인 타협과 합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비규범적 입장만을 복습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학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글이 어떤 국가가 더 나은 국가인지의 근원적인 질문과 좌표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떤 국가가 더 나은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규범성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는 비뚤어진 인간관, 사회관, 정부관을 교정할 수 있는 정초(foundation)가 될 것이며, 국가다운 국가를 구축하는 주춧돌이자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교성. 2013.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정책》, 40(1): 31-59.
- 김병섭·강인철·김수현·김연명·김인숙. 2015.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위험관리전략: 복지국가의 재설계.” 《사회보장연구》, 24(1): 1-26.
- 김지영. 2010. “이상한 나라의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확장과 돌봄의 제도화.” 사회적재생산연구회. 《여/성 노동, 가치를 말하다》, 84-124.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김태성·성경률. 2014. 《복지국가론》. 개정2판. 파주: 나남.
- 김희강·강문선. 2010. “돌봄의 공공윤리.” 《한국정치학회보》, 44(4): 45-73.
- 남찬섭. 2012. “공공성과 인정의 정치, 그리고 돌봄윤리.” 《한국사회》, 13(1): 87-122.
- 마경희. 2011. “돌봄의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 비판.” 김혜경 편. 《노인돌봄》, 17-48. 파주: 양서원.
- 석재은. 2011. “좋은 돌봄의 정책 원리: 돌봄의 상품화를 넘어서.” 김혜경 편. 《노인돌봄》, 49-80. 파주: 양서원.
- 송다영. 2014.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여성연구소 편. 《젠더와 사회》, 417-446. 파주: 동녘.
-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33: 5-35.
- 정영애. 2013. “노인장기요양정책과 돌봄노동.” 《젠더리뷰》, 52-58.
- 정원오. 2010. 《복지국가》. 서울: 책세상.
- 조한혜정. 2006.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여성 네트워크에 의한 새로운 인프라 만들기.” 조한혜정.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13-41.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허라금. 2006. “돌봄의 사회화.” 조한혜정 외.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42-58.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서울신문》. 2016. “한부모가족 중 1곳 차상위·저소득층.” 3월 23일.

- Real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s, Stephanie. 2015. *The Core of Care Ethics*. Hampshire: Palgrave.
- Daly, Mary, and Jane Lewis.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Eichner, Maxine. 2015. "The Supportive State: Government, Dependency, and Responsibility for Caretaking." In Daniel Engster and Maurice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pp. 87-10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ngster, Daniel. 2007.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근간) 《정의의 심장: 돌봄윤리와 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 \_\_\_\_\_. 2015. *Justice, Care, and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ngster, Daniel, & Maurice Hamington. 2015. "Introduction." In Daniel Engster and Maurice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pp. 1-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 Fineman, Martha Albertson. 2001. "Dependencies." In Nancy J. Hirschmann, and Ulrike Liebert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pp. 23-37),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he Autonomy Myth: A Theory of Dependency*. New York and London: New Press.
- Fraser, Nancy. 1997.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In her *Justice Interruptus* (pp. 41-66),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Fraser, Nancy & Linda Gordon. 2002. "A Genealogy of *Dependency*: Tracing a

- Keyword of the U.S. Welfare State." In Ellen K. Feder and Eva Feder Kittay (eds.). *The Subject of Care: Feminist Perspectives on Dependency* (pp. 14-39),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Gilligan, Carol.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in, Robert E. 1985. *Protecting the Vulnerable: A Reanalysis of Our Social Responsibili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8. *Reasons for Welfare: The Political Theory of the Welfare Stat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mington, Maurice & Dorothy C. Miller. 2006. "Introduction: A Modern Moral Imperative." In Maurice Hamington and Dorothy C. Miller (eds.). *Socializing Care: Feminist Ethics and Public Issues* (pp. xi-xxii).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Hamington, Maurice & Maureen Sander-Staudt. 2011. *Applying Care Ethics to Business*. New York: Springer.
- Held, Virginia. 1993. *Feminist Morality: Transforming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근간) 《돌봄윤리: 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서울: 박영사.
- \_\_\_\_\_. 2015. "Care and Justice, Still." In Daniel Engster and Maurice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pp. 19-3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rschmann, Nancy J. & Ulrike Liebert. 2001. "Introduction: Engendering Welfare, Degendering Care: Theore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Nancy J. Hirschmann and Ulrike Liebert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pp. 1-19),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Kim, Hee-Kang. 2016. "Is Long-Term Insurance in South Korea a Socialising Care Policy?" *Critical Social Policy*, 36(4): 1-19.
- Kittay, Eva Feder.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김희강·나상원 역(2016) 《돌봄: 사랑의

노동》, 서울: 박영사.

- \_\_\_\_\_. 2001a. "From Welfare to a Public Ethic of Care." In Nancy J. Hirschmann and Ulrike Liebert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pp. 38-64),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_\_\_\_\_. 2001b. "When Caring is Just and Justice is Caring: Justice and Mental Retardation." *Public Culture*, 13(3): 557-579.
- \_\_\_\_\_. 2001c. "A Feminist Public Ethic of Care Meets the New Communitarian Family Policy." *Ethics*, 111(3): 523-547.
- \_\_\_\_\_. 2015. "A Theory of Justice as Fair Terms of Social Life Given Our Inevitable Dependency and Our Inextricable Interdependency." In Daniel Engster and Maurice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pp. 51-7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nijn, Trudie & Monique Kremer. 1997. "Gender and the Caring Dimension of Welfare States: Toward Inclusive Citizenship." *Social Politics* 4(3): 328-361.
- Lewis, Jane.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Marshall, T. H. 1977[1950]. "Citizen and Social Class." In hi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1[1969]. "Reflection on Power." In T. H. Marshall (ed.).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New York: Free Press.
- Moon, J. Donald. 1988. "The Moral Basis of the Democratic Welfare State." In Amy Gutman (ed.).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pp. 27-5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he Political Theory of the Welfare State." In Gerald F. Gaus and Chandran Kukathas (eds.). *Handbook of Political Theory* (pp. 210-222), London: Sage Publications.
- Noddings, Nel.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2. *Starting at Home: Caring and Social Poli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ussbaum, Martha. 2006.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and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 Orloff, Ann Shol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03-328.
- Pierson, Christopher. 2007.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3rd ed.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Pearce, Diana. 1990. "Welfare Is not for Women: Why the War on Poverty Cannot Conque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Linda Gordon (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pp. 265-279).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Polanyi, Karl. 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2nd ed. Boston: Beacon Press.
- Robinson, Fiona. 1999. *Globalizing Care: Toward a Politics of Peace*. New York: Ballantine Books.
- \_\_\_\_\_. 2011. *The Ethics of Care: A Feminist Approach to Human Security*. Philadelphia, Pennsylvania: Temple University Press.
- Ruddick, Sara. 1980. "Maternal Thinking." *Feminist Studies*, 6(2): 342-367.
- Sainsbury, Diane. 1999. "Gender and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s." In Diane Sainsbury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pp. 75-1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midtz, David & Robert E. Goodin. 1988. *Social Welfar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venhuijsen, Selma. 1998. *Citizenship and the Ethics of Care: Feminist Considerations on Justice, Morality an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3. "The Place of Care: The Relevance of the Feminist Ethic of Care for Social Policy." *Feminist Theory*, 4(2): 179-197.
- Slote, Michael. 2007. *The Ethics of Care and Empathy*. New York: Routledge.
- Tronto, Joan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1. "Who Cares? Public and Private Caring and the Rethinking of Citizenship." In Nancy J. Hirschmann and Ulrike Liebert (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pp.

65-83),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_\_\_\_\_. 2010. "Creating Caring Institutions: Politics, Plurality, and Purpose." *Ethics and Social Welfare*, 4(2): 158-171.

\_\_\_\_\_.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2014) 《돌봄 민주주의》, 서울: 아포리아.

\_\_\_\_\_. 2015. "Theories of Care as a Challenge to Weberian Paradigms in Social Science." In Daniel Engster and Maurice Hamington (eds.).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pp. 252-27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hite, Stuart. 2010. "Ethics." In Francis G. Castles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pp. 19-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